

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|
| 접수번호     | 접수일 | 처리기간  | 즉시 |
| 상호(법인명칭) |     | 전화번호  |    |
| 소재지      |     |       |    |
| 대표자      |     | 생년월일  |    |
| 허가번호     |     | 허가연월일 |    |
| 폐지연월일    |     |       |    |
| 폐지사유     |     |       |    |

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 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|      |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허가증 원본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|

유의사항

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